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교육

6차시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주요 반부패 법령 이



목차 6사시 경덤윤리경영을 위한 수요 만부때 법령 이 해

I.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Ⅱ.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Ⅲ. 부패공익신고제도





♥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법
- 이해충돌방지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사회가 복잡해지며 이해충돌상황이 더욱 다양해지 명문적인 제재가 아닌이행력이 담보된 법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행위기준 필요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필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선진국들은 법·제도화 추세

장기간의

심사숙고로 법 완성도 향상

I.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흐름

■ 이해충돌방지법의 연혁

2021.12

2022.05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국회 제출 2013.08 2016.09 청탁금지법은 시행되었으나 이해충돌방지규정 제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시행 2018.0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 20대 국회 제출 2020.01 2020.0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 21대 국회 제출 1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정무위 공청회 2021.03 14일, 정무위 법안 소위(총 8차례) 심의 및 의결 2021.04 29일,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 2021.04 2021.05 법률 공포

31일, 시행령 공포

19일, 법령 시행

♥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흐름

■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적용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적용 대상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각급 국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 법률에 따라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모든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공공기관 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2	가족 채용 제한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1 항

공직자는 업무처리 <mark>중 소관직무</mark>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대리인 <mark>포함)가 사적이</mark>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제2 항 직무관련자 등은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가능

신고대상 소관직무

- 인허가, 심자, 증인, 단속 등 관련 직무
- 채용,평가, 감사 등 관련 직무
- 조세, 과징금 등 부과·징수 관련된 직무
- 보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 관련 직무
- 공사, 용역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등 관련 ___직무____

사적이해관계 자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하거나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TIP. 제5조 관련 16개 유형의 소관직무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사례 예시



민간기업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는 이번 분기 감사 업체 중 B사가 있는 것을 확인함

B차는 A가 송 발행주식 중 40%를 가지고 있는 회사임

신고대상 직무에 해당하는가?

사적이해관계가 얽혀있는가?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이므로 신고대상 직무 대통령령에 따라 총 발행주식 중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위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1 항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등 포함)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제2 항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mark>관이 부동산 개</mark>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신고해야 함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새만금개발공사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부동산 개발 업무

-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

-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사례 예시



부동산을 취급하는 A공사에서 근무하는 A는 공사에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부지가 배우자 B의 소유인 것을 인지함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함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제1 항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재 사항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사례 예시



변호사였던 A는 2023년 1월 1일, 고위공직자인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으로 임용됨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해야 함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 항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 등이 공직자의 직무<mark>관련자와</mark>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신고대상)사적거 래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례 예시



신고사건을 담당자 A가 B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의 배우자가 이사를 위해 B사의 사건 신고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깨달음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함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항목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mark>있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mark>

직무 관련 외부활동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허용)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허용)



-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사례 예시



A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B는 A공공기관의 평가 담당직원C의 부탁으로 평가와 관련하여 사적으로 조언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음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인가?

B가 직무관련자인 C에게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함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제1 항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없음

사례 예시



A는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계약직 직원을 뽑는 상황에서 지원자 중 고위공직자 B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경쟁절차 없이 채용을 하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됨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 항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mark>직자 등 법에서 제한</mark>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법에서 제한하는

- -소속-고위공직자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위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 ~~~위에·해당하는~사람이~대표자인·법인·또는~단체,~또는~그와 관계된·특수관계사업자·

-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례 예시



A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업체를 검토하고 있던 중 자신이 속한 기관을 감독하는

B기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어 수의계약을 맺고자 함

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해당하는가?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대상에 해당함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이므로 금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인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임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유도·묵인하는 공직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항목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사례 예시



공공기관 산하 연구소 A의 직원들이 연구소 설비인 3D프린트를 이용해 개인적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발각됨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 <mark>공직자</mark>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mark>관의 미공</mark>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항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제2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항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행위 금지

제3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하여 항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공직 자

> - 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

미공개 정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사례 예시



공직자A는 친구B를 위해 그에게 식품관리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주고, 식품업체C의 채용담당자에게 'B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면접을 보라'며 은근히

재용을 권함

사적이익을 위해 미공개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였으므로 B는 처벌대상임

<제27조 벌칙>

대상	행위	위반내용	처벌
공직자	재산상 이익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위반	몰수·추징)
제3자	재산상 이익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위반	몰수·추징)

-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퇴직 사적 접촉 -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사람 행위 사례 예시 지난 해 퇴직한 A가 창업허가신청을 하러 왔다가 허가담당부서장 B에게 주말에 골프를

지러 가자고 함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치는 경우 B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TIP. 행위기준 관련 공직자의 가족 범위 정리



관련 조문	가족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5조)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 공직자 자신 - 배우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대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공직자 자신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제재

공직자는

제23조 비밀누설 금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제21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26조 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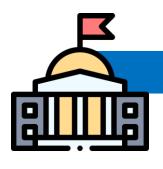
大법 원반 발견 시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할 경우 직무의 중지 및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으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해야 함

제28조

금액	위반항목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본인이나 제3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 청탁금지법 개요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적용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 언론사



적용 대상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일반국민(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청탁금지법 개요

■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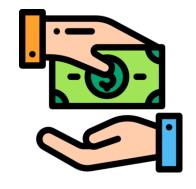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됨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됨



♥ 부정청탁의 금지

■ 관련 조항



제5조(부정청탁의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 공개적인 요청, 단순 확인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요청은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위반행위	처벌수준
1.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단, 공직자 등의 경우 징계)
2.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3.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청탁자가 공직자가 아닌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4.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도 보저처타에 따라 지므로 스해하 고지자 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



TIP.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의 유형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금지

■ 사례

사례 1

A는 본인이 소속된 B기관의 면접위원들에게 전화로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며 실무면접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청탁함

B기관 감사실에서 면접위원의 통화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면접번호 유출사실을 발견하고 면접위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부정청탁을 발

위반자 과태로

사례 2

A는 인사담당관 B에게 C와 D의 인사이동을 청탁하였는데, C가 실제로 A가 청탁한 내용대로 해당팀으로 발령을 받았음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관련 조항

제8조(금품등의 수수

공직자는 <mark>직무 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mark>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해선 안 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예외로 볼 수 있으며,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의 두 배까지 받을 수 있음

금품 등의 종류

-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접대·향응, 편의 제공
-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TIP.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예외 조항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다만, 선물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4.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사례

사례 1

공공기관 직원 A는 4개 부서 대상 종합감사에 감사반원으로 편성되어 참여하였음(당시 감사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직원 A는 감사반원으로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

감사종료 후 직원 A는 평소 동일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2개 부서의 직원과 업무너하며 각각 저녁식사를 했고, 감사대상 부서의 직원이 식사비용을 각각 정치 처분

사례 2

A는 심사를 담당하면서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총 1,400만원의 금품(8회) 및 211만원 상당의 향응(11회)을 수수하였음 따면 서분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mark>외부강의의 대가</mark>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mark>초과하는 사례금을</mark> 받아서<u>는 안 됨</u>

외부강의를 할 때는 요청 명세서 등을 강의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신고 해야 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분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 원 (직급별 구분 없음)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 원 (1시간 상한액 + 1시간 상한액의 50%)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사례

사례 1

직원 A는 B대학교에서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이를 40일이 지난 후에 지연사 시 서분

사례 2

A기관에서 개최한 "B 용역 사업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였으나, 내부 감사시스템에 기리 신고(또는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 경고 기본

皿. 부패공익신고제도

♥ 부패신고제도

부패신고

부패행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 공직자 직무와 관련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또는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는 점차 은밀화·구조화·지능화됨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조력이 필요함





皿. 부패공익신고제도

♥ 공익신고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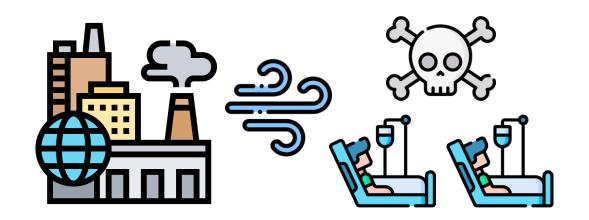
공익신고

각종 <mark>공익침해행</mark>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는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감사원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 국회·법원 증언의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신고자 보호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조시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 공사 등 공공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국회의원

신고자 보호는 어느 가능하나, 부패신고 보상금지급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만 해당됨

♥ 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수사·조사기관의 사건 처리

처리 절차

신고서 제출

- ✓ 신고자 인적사항
- ✓ 신고대상 및 증거 제시

접수 확인

- ✓ 신고 접수
-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 √ 증거 유무 확인 및

 특정
- ✓ 필요 시 보완 요구

수사·조사

- ✓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수사·조사
- ✓ 관할이 아닐 경우 신고자 동의를 구하여 해당 수사·조사 기관에 이송
- ✓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종결처리

결과 통보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처리

처리 절차

신고서 제출

- ✔ 신고자 인적사항
- ✓ 신고대상 및 증거 제시

접수・확인

- ✓ 신고 접수
-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 ✓ 증거 유무 확인 및 특정
- ✓ 필요 시 보완 요구

처리

- ✓ <mark>수사·조사</mark> 필요시 각 해당기관에 이첩·송부
- ✓ 부패행위·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종결처리

수사·조사

- ✓ <mark>수사·조사실시</mark>
-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결과 통보

- ✓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실명신고 원칙

신고자의 보호 및 무고성 신고 예방을 위함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가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 제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접수

내부신고자라면 권익위의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서도 상담과 대리신고가 가능

권익위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 부패공익신고제도의 사례

부패신고 사례

00공사 직원인 A는 Y사 대표인 B의 보증채무 약 315억 원을 조건부 채무면제 해주는 대가로 B로부터 제3자 계좌를 이용하여 뇌물 7,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B는 A에게 같은

금액의 뇌물을 공여함

조사기관

- 수사결과, A와 B의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입

*출처: 2020년 부패 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제19집)

공익신고 사례

A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로 제조하는 일을 했는데,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응축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도에 방류함

위원회

- 신고서와 함께 동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청에 이첩함



亚巴 丕从

*출처 : 2019년 부패 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제19집)

🌳 보호 제도

■ 신변보호제도

비밀보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신분보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불 불이익 발생 시, 권익위에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요구

신변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 신고자 및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할 경찰서 등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등으로 신변 보호

책임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신고자의 범죄행위 등에 대해 형벌, 징계,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권익위가 징계 또는 행정처분 감면요구 가능

신고자 뿐만 아니라 신고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보호 제도

■ 신고자 보호 사례

신고자 보호 사례

A는 D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업체가 설계내역과 달리 시설물의 일부 수량을 미시공한 의혹을 신고하였다.

A는 신고를 한 이후 피신고자 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하는 등 신변에 불안을 느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고, 신고자는 주거지 순찰 강화, 위치 추적장치 제공 등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보상 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포상 및 보상 등

-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신고자 <mark>및 협조</mark>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 금 보상 금 구조금

-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손실 방지· 공익 증진의 경우
- 최고 2억 원까지 지급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 및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권익위 신고 한정)
- 최고 30억 원까지 지급

- 치료비, 이사비,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 신고 한정)
- 공익신고도 부패신고와 유사하게 포상금(최고 2억 원), 보상금(최고 30억 원), 구조금 제도 운영
- 공익신고 보상금은 권익위 신고가 아니어도 지급 가능하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

♥ 보상 제도

신고자 보상 사례

A는 사무장병원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치료로 거액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B병원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A의 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금 부과 뿐 아니라 병원 지정취소, 의사자격정지, 징역 1년 6개월 등의 처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신고로 인하여 80억 4천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 A에게 2억 306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흐름

이해충돌방지 법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법
- 이해충돌방지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조항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2	가족 채용 제한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청탁금지법의 개요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됨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됨



<u>제5조(부정청탁의 금지)</u>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는 <mark>직무 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mark>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해선 안 됨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mark>초과하는 사례금</mark>을 받아서는 안 됨





부패공익신고제도

♥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개요

부패신고

부패행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각종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 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수사·조사기관

신고서 제출

접수.확인

수사·조사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제출

접수.확인

처리

수사·조사

결과 통보

(이첩·송부)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실명신고 원칙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이용 가능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부패공익신고제도

♥ 보호제도

비밀보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신분보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신변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책임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 보상제도(부패신고)

포상 금 보상 금

-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손실 방지· 공익 증진의 경우
- 최고 2억 원까지 지급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 및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권익위 신고 한정)
- 최고 30억 원까지 지급

구소 금

- 치료비, 이사비,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 신고 한정)

